

아주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4조(기구) 본 대학교에 총장, 교무부총장, 의무부총장, 산학부총장, 대학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, 특수학부, 대학교본부, 부속기관, 연구기관, 지원기관,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, 의료원, 총장직속기구, 부총장직속기구 및 특별기구를 두며, 세부사항은 <u>별표1</u> 과 같다.	제4조(기구) 본 대학교에 총장, 교무부총장, 의무부총장, 산학부총장, 대학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, 특수학부, 대학교본부, 부속기관, 연구기관, 지원기관,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, 의료원, 총장직속기구, 부총장직속기구 및 특별기구를 두며, 세부사항은 <u>별표1</u> 과 같다. <u>(개정 2026. . .)</u>	- 별표1 기구 · 재정지원사업명 변경에 따른 직제개편 · 지원기관 신설
<u><신 설></u>	<u>부 칙 <기획팀- 호 : 2026. . . ></u> <u>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</u>	

별표1. 기구

현행				개 정 (안)				개 정 사 유
구 분		기 구		구 분		기 구		- 첨단바이오융합대학 지원 기관 신설 <